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4704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민

변론 종결2024. 3. 14.

판결 선고2024. 4.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007,310원과 그 중 20,435,555원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20,419,997원에 대하여는 2023. 11. 3.부터 각 2024. 2. 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7. 25. 및 2022. 11. 16.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2. 7. 25. 접수 제86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과 2022. 11. 16. 접수 제1293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아래 각 신용보증일자에 피고 A과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C(주)	2021-01-25	D	10,000,000원	2022-01-24(2024-01-19까지 연장)
2	(주)E	2022-04-27	F	20,000,000원	2027-04-27
3	C(주)	2022-07-28	G	10,000,000원	2027-07-27

2) 피고 A은 위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이 위 각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아래 각 일자에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034,228원,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117,530원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8%이다.

1	C(주)	2023-11-03	10,243,753
2	(주)E	2023-09-27	20,435,555
3	C(주)	2023-11-03	10,176,244

1	C(주)	2023-11-03	10,243,753
합계	40,855,552		

나. 피고 A의 채무, 담보제공 등

- 1) 피고 A은 2015.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2015. 4. 30.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6. 17.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 3) 피고 A은 2018. 1.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2021. 9. 3.부터 2021.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I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34,565,000원을 차용하였다.

1	2021. 9. 3.	I저축은행	99,965,000
2	J	20,000,000	
3	2021. 11. 15.	K	20,000,000
4	(주)L	20,000,000	
5	2021. 11. 24.	M	54,600,000
6	2021. 12. 31.	(주)N	20,000,000
합계	234,565,000		

- 4) 피고 A은 2021. 11. 25.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A의 부친인 피고 B는 2022. 1. 26.부터 2022. 3. 8.까지 피고 A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의 처 O은 2022. 3. 17. 피고 A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은 2022. 1. 26. I저축은행에 103,001,094원, J에 20,000,000원, K에 20,000,000원, 주식회사 L에 20,000,000원, 주식회사 N에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피고 A은 M에게 2021. 12. 24.부터 2022. 4. 15.까지 합계 7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M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바. 피고 A은 2022. 7. 25.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등기를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사. 피고 B는 2022. 8. 15.부터 2022. 10. 12.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600,000원을 송금하였고, O은 2022. 8. 9.부터 2022. 11. 15.까지 피고 A에게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피고 A은 2022. 11. 16.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등기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자. 피고 B는 2022. 12. 6.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차. 피고 A은 2023. 9. 14. 당구장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2,007,310원(= 대위변제금 잔액 40,855,552원+채권보전비용 1,034,228원+추가보증료 117,530원) 및 그 중 E에 대한 대위변제금 20,435,55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3. 9. 27.부터,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합계 20,419,997원(= 10,243,753원+10,176,24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3. 11.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1. 2024. 2.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7. 25. 이전에 순번 1, 2번 보증약정,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11. 16. 이전에 각 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22. 11. 16.로부터 10개월 후인 2023. 9. 27.부터 2023. 11. 3.까지 원고가 E 등에 합계 40,855,552원(= 10,243,753원+20,435,555원+10,176,244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당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7. 25. 현재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40,000,000원, E 및 P카드에 대한 채무 41,000,000원¹⁾, B와 O에 대한 채무 268,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11. 16. 현재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40,000,000원, E 및 P카드 채무 41,000,000원, B와 O에 대한 채무 279,6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피고 B는 당구장 운영을 위해 2021. 9. 3.부터 2021. 12. 31.까지 I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24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약 9,600,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약정한 후 피고 B로부터 2022. 1. 26.부터 2023. 3. 20.까지 무이자로 합계 340,6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286,000,000원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A의 위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2022. 1. 26.부터 2022. 3. 17.까지 피고 B 측으로부터 합계 268,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로부터 약 4개월 지난 2022. 7. 25.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8. 9.부터 2022. 11. 15.까지 피고 B 측으로부터 합계 11,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22. 11. 16.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 A은 신규자금의 추가 유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 아니라, 피고 B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M에 대한 채무 6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황에서 M에게 65,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M에게 제공되었던 담보를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일인 2022. 4. 1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25.에야 체결된 것으로서, 이미 3개월 동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지원

별지

1) 피고 B는 답변서 5면에서 2023. 3. 20. 피고 A에게 41,000,000원을 대여하여 E 및 P카드에 41,000,000원을 상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22. 7. 25. 및 2022. 11. 16. 당시에든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